

비관세 장벽 모니터링 보고(일본 도쿄지사)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2020.6월)

1. 일본 식품위생법 개정 시행 관련

- 일본 후생노동성은 식품 위생법 제11조 제2항 일부 개정관련 관계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향후 생굴 및 복어 제품을 일본에 판매용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출국 정부로부터 발행된 위생증명서(또는 사본)를 첨부하지 않으면 수입이 불가능하게 됨
- 본 제도는 2020.6.1.일자로 시행되며, 한국의 경우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행하는 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 복어의 경우 가식이 가능한 어종으로 판별 가능한 복어일 경우 내장이 처리되지 않은 경우라도 수출이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 내장 처리가 완료된 복어에 한해 수출이 가능함

※ 자료원 :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uu/shokuhin/yunyu_kanshi/index_00011.html

2. 일본정부 캐나다, 스위스, 호주와 유기축산물 수출조건 합의

- 일본농림수산성은 캐나다, 스위스, 호주 정부와의 협약에 의해 2020년 7월 16일부터 각 상대국간에 유기 인증을 받은 축산물 등에 대해 「organic」으로 표시하여 상호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발표함
- 동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자국내에서 유기인증 마크를 취득한 경우에는 상대국에서 별도의 유기인증 취득 절차가 필요 없이 바로 유기인증마크를 부착한채로 수출이 가능하게 됨으로서 생산자 및 수출업체의 편이성이 크게 확대됨
- 유기농산물에 대해서는 각국과 종래부터 이미 도입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축산물 및 축산가공품으로 까지 확대된 바 있음

※ 자료원 :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 시사점

- 일본산 소고기 등 해외에서 인기가 높은 수출품목에 대한 유기축산물 상호 인증 제도 도입을 통해 수출 부가가치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전망됨

3. 중국산 당근 제품의 전수검사 발동조치

- 대일수출 중국산 신선당근에서 잔류농약 위반사례가 복수 발생함에 따라 일본 정부는 6월15일자로 중국산 당근에 대해 전수검사 조치를 내리고 모니터링 검사 강화에 들어감
 - 문제가 된 농약은 Triadimenol 성분으로 기준치 0.1ppm을 초과한 사례가 2회 연속 발생하여 명령검사에 들어간 상황임
 - 중국산 당근은 주로 업무용으로 소비되는데, 2019년도의 경우 93,426톤이 일본으로 수출되었으며, 2020년도에는 16,493톤이 수출됨
- ※2019년 : 2019.4.1.~2020.3.31./ 2020년 : 2020.4.1.-6.9까지 산정

□ 시사점

- 중국산 당근의 경우 매수입시 마다 잔류농약 검사에 따른 대기시간과 검사비 등의 증가로 인해 수입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상대적으로 한국산 생산여력이 있을 경우 수출 기회 여지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짐

II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1. 일본국 수입식품 위반사례 주요내용

- 위반사례 발생 주요 특징
 - 일본 후생노동성 수입식품안전대책실 발표자료에 의하면 2020. 6월의 대일수입식품류 위반건수는 33건이 발생함(식기류 제외)

- 한국산 식품의 위반사례는 신선들깨잎에서 잔류농약 위반 1건, 레토르트 김치 양념에서 미생물 양성의 2건의 위반사례가 발생함
- 각국에서 수입된 전체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잔류농약 위반사례가 9건(27.3%), 냉동식품등의 대장균균 검출로 인한 위생위반이 8건(24.2%), 첨가물 위반이 6건(18.2), 아마니유에서 시안화합물등의 기타 위반사례가 6건(18.2), 땅콩류등의 아플라톡신 검출위반 4건(12.1) 등으로 나타남

2. 주요 경쟁국별 위반 사례

○ 중국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 분석

- 중국산 수입식품의 위반건수는 7건으로 위반건수가 제일 높았으며, 각국에서 수입되는 전체 수입식품의 위반율중 21.2%를 차지함. 잔류농약이 3건, 세균수 초과 등 위생위반 2건, 기타 2건이 발생함
- 중국산 신선당근에서 잔류농약인 트리아디메놀이 기준치인 0.1ppm을 초과한 0.2 및 1.0이 검출되어 잔류농약 위반으로 인한 명령검사조치가 발동됨으로서 향후 중국산 당근은 매 수입시마다 잔류농약 검사를 받아야만 통관이 이루어지게 된다.
- 냉동브로콜리에서 잔류농약 프로시미돈이 기준치인 0.01ppm을 초과한 0.02가 검출되는 위반사례가 발생함
- 현재, 중국산 양파 및 브로콜리, 양파의 경우 모든 수입시마다 잔류농약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야 통관이 가능함

○ 베트남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 분석

- 베트남은 냉동고추 2건 및 신선바나나에서 잔류농약 1건 계3건이 발생하였으며, 냉동튀김식품에서 E.coil 양성의 위생위반이 2건 발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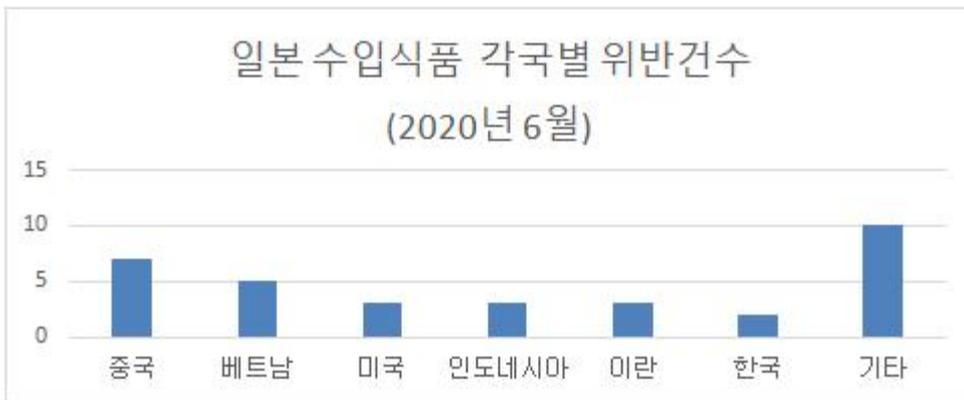
○ 한국산 대일 위반사례

- 한국산의 경우 신선들깨잎에서 잔류농약인 치아클로프리트가 기준치인 0.1ppm을 초과한 0.2ppm이 검출되어 위반되었으며, 레토르트 김치 양념에서 발육가능한 미생물이 양성으로 나타나 위반사례로 판정됨

○ 기타국가

- 미국의 경우 3건의 위반건수 중 땅콩, 아몬드, 무화과에서 각각 아플라톡신이 검출되어 위반으로 판정됨
- 인도네시아의 경우 첨가물 수입시 확인시험 부족 이유로 인한 동일제품에 대한 위반사례가 3건이 발생함

<표1> 대일 수출 국가별 식품 위반건수



※ 표 왼쪽 숫자는 위반건수임

<표2> 국가별 식품 위반 내역 상세

| 국가명 | 위반건수 | 위반율 | 잔류농약 | 아플라톡신 | 위생 | 첨가물 | 기타 |
|-------|------|-------|------|-------|------|------|------|
| 중국 | 7 | 21.2 | 3 | | 2 | | 2 |
| 베트남 | 5 | 15.2 | 3 | | 2 | | |
| 미국 | 3 | 9.1 | | 3 | | | |
| 인도네시아 | 3 | 9.1 | | | | | 3 |
| 이란 | 3 | 9.1 | | | | 3 | |
| 한국 | 2 | 6.1 | 1 | | 1 | | |
| 기타 | 10 | 30.3 | 2 | 1 | 3 | 3 | 1 |
| 합계 | 33 | 100.0 | 9 | 4 | 8 | 6 | 6 |
| 비율(%) | | | 27.3 | 12.1 | 24.2 | 18.2 | 18.2 |

III FTA 이행 이슈 관련

(해당 없음)